

1. 개정이유

각종 신청서·신고서 서식에서 기본증명서를 신청인 제출서류에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삭제 및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 나.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 조회 중(2025. 5. 22. ~ 6. 2.)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 진행 예정(2025. 5. 28. ~ 7. 7.)
- 3) 행정규제 : 행정규제 미대상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외국민등록신청서

색상이 (앞쪽)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심사관
신청인	성명(한글)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여권번호	병역관계 ※ 해당란에 [√] 표시하세요. [] 병역필 [] 미필 [] 해당 없음

연락처	대한민국 내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작성하세요.
	체류국 내 주소 또는 거소	※ 체류국 정부에 등록된 별도의 주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기재하세요.
	체류국 내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체류 정보	최초 입국일	
	체류목적 (※ 해당내용 ○)	거주, 동거, 유학, 취업, 투자, 주재(상사원/공무원), 기타()
	체류자격 (※ 해당내용 ○)	영주, 가족체재, 유학, 취업, 투자, 상용, 공무, 워킹홀리데이, 기타()

추가 정보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만 작성	체류국 내 직업 및 소속 기관	(체류국 내 직업) (소속기관)
	국내 연고자 연락처	※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해외체류 중 사고발생시 지원을 위하여 필요) (성명) (연락처)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주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체류국의 사증(査證), 출입국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체류국 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1. 여권 2.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요구 기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재외국민등록의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뒤쪽)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대한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정보의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본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유의사항

1. 재외국민등록은 재외국민등록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대상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등록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등록대상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대리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대리신청을 위하여 등록대상자 본인은 아래 '위임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등(여권, 주민등록표 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은 대리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 체류국 최초 입국일은 체류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의미합니다.
6.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등록공관 담당자에게, 주소나 거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변경되면 새로 등록할 공관의 담당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교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신청을 위한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한 사람(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는 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210mm×297mm[백상지 80g/㎡]

재외국민등록 [] 변경 [] 이동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심사관	
신고인		성명(한글)		성명(영문)	
		주민등록번호(국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생년월일 및 성별)			
		여권번호			
		체류국 내 연락처(전화번호/E-mail)		기존 재외국민 등록공관명	
신고 사항		[] 새로운 주소지 신고			
		[] 성명 [] 주민등록번호·성별·생년월일 [] 체류국 최초 입국일 [] 병역관계			
		[] 그 밖의 등록사항			
		종전		변경(이동) 후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 「재외국민등록법」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이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주 대사관·총영사관(분관·출장소)의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체류국의 사증 등 체류자격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해당합니다)	
	2. 새로운 주소나 거소가 소재한 체류국의 입국을 증명하는 서류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체류국이 변경된 경우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대리신청의 경우 해당합니다)
		4.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존 등록사항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성별 및 생년월일), 여권번호,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 입국일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아래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성별 및 생년월일):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정보 제공요구	본인정보 제공요구	2. 여권번호: 여권
		3. 병역관계: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4. 체류국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행정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본인에 대한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정보의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의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본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안내사항

1.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신고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국내 행정정보를 통하여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하며, 영문 성명의 변경 시에는 체류국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는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재외국민등록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재외국민등록자의 위임을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인 및 재외국민등록자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 대리신청을 위하여 재외국민등록자 본인은 아래 '위임장' 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등(여권, 주민등록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본인은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재외국민등록의 변경신고 또는 이동신고를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신고인과의 관계

210mm×297mm[백상지 80g/㎡]

